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
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검토보고서

(2014년 4월 2일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박상수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토보고서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4 03월 21일(금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

2014년 03월 25일(화)

4. 관련근거

가. 「도로법」 제76조

나.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

다.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요청

(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-16027, 2013.10.18)

라. 조례개정 추진사항 알림

(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-18589, 2013.12.17)

5. 개정이유

『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』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, 우리구 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의 일관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6. 주요 개정내용

- 도로굴착복구 시 품질향상을 위해 최소굴착폭 및 굴착면적 상향조정 (안 별표1)
-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손궤 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기준 추가 (안 별표2)
- 굴착 토사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 허용 (안 별표3)
- 보도 상 굴착 작업 시 기계굴착 허용 (안 별표3)
- ‘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’ 준수 의무화 명시 (안 별표3)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7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도로 굴착복구 시 기총다짐을 견고히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『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』를 개정하여 2013년 10월 4일 공포·시행 후 각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도(區道) 역시 시도(市道)와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,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굴착복구 공사 시 서울시의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내용은 도로굴착복구 시 진동롤러 등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견고한 기층
다짐을 할 수 있도록 최소굴착폭과 최소굴착면적을 기존 0.7m에서 1.2m로
상향 조정하고(안 별표1),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보도
손궤 등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
표준단면의 기준을 추가하였으며(안 별표2),

굴착복구 시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
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(안 별표3), 인력 굴착이 원칙인 보도 상 굴착
작업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굴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며(안 별
표3), 보도공사 정밀시공과 시민 통행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‘서울특별시
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’에 따라 시행하도록 조례에 명문화 함(안 별표3)

기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
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

관계 법령

■ 도로법

제76조(원인자 부담금) ① 타공사나 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태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0.3.22>

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0.3.22, 2013.3.23>

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「도로법」 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) ① 생략

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계부분 및 간접손계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. 다만,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계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계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1.7, 2010.4.22, 2010.7.15>

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,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,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,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정한다. <개정 2010.1.7, 2010.4.22>

④ 생략

제6조(권한의 위임) 제3조,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·환급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